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310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의결주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의결 주문 중 “10%로 제한하고 있고”를 “정하고 있고”로 수정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결 주문 중 “10%로 제한하고 있고”를 “정하고 있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 의 안	수 정 안
<p>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바이오, ICT 등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p>	<p>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바이오, ICT 등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p>
<p>이에 전문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종 현안과 주민관심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p>	<p>이에 전문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종 현안과 주민관심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p>
<p>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p>	<p>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p>
<p>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p>	<p>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p>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 규모를 10%로 제한하고 있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재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의 위배인 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인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 규모를 정하고 있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재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의 위배인 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인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

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따라 복잡화·다양화·전문화 추세에 있으며, 각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바이오, ICT 등 지역에 맞는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이에 전문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을 채용하여 각종 현안과 주민관심분야에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달리 지정규모를 정하고 있고, 근무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국가직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근무기간 총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및 공모직위 공무원은 총5년의 근무기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에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재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의 위배인 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을 통해 행정의 안정적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직간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9. 3.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